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13호 2018. 8. 9.(목)

## 고 시

제2018 - 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1
제2018 - 125호	공간시설(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4

## 공 고

제2018 - 864호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제2018 - 884호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7
제2018 - 886호	남해군 이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제2018 - 888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제2018 - 889호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35
제2018 - 892호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6

## 알 림

남해군의회 규칙 제26호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	41
남해군의회 규칙 제27호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46
대명 제2018 - 796호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55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72-4 외 3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부 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직장리 472-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49-11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1159-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30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회계리 1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13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1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3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 31-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5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6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6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31-1, 31-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05-5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 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99-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143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99-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143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47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로 541-45	20090427	두곡(신동, 정동, 쇠를 불리던 곳)과 양지(산을 등지고 앉은 마을의 좌가 장남)를 연결하는 도로임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룡리 27-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면곡로 102-21	20090427	행정리틀 이용, 막골곶에 빈 면곡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마을에 풍긴 데에서 유래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41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92-38	20090427	창선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기인리 58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 447-15	20090427	고려 충신왕대 개칭한 창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4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 295-24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46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901-8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115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70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2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봉회리 14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금민로 370번길 9-15	20091023	금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신구리 684-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031번길 92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58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675번길 29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공술리 1416-1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503번길 4-2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652-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달로 78번길 13-21	20091023	성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면리 126-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56-27	2009042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조성되는 북새태마파크로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2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항리 82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항로 173번길 15-84	20091023	평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항리 8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항로 173번길 15-92	20091023	평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50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진로 496번길 32	20090427	흥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변 경

연번	지번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997-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197번길 26-1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197번길 26-12	20180731	신축에 의한 건물번호 합병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100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197번길 26-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197번길 26-12	20180731	신축에 의한 건물번호 합병
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174-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576번길 8-4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576번길 8-42	20180719	민원신청

폐 지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폐지 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룡리 산2-3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 310	폐지 사유

도로명주소 폐지일 20180717 도로명주소전환시 발생한 오류 정정을 위한 건물번호 폐지

남해군 고시 제2018 - 125호

### 공간시설(교통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간시설(교통광장)의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3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교통광장)
- 명 칭 : 남해읍 우회도로입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사명	시설종류	위치	사업면적	비고
남해읍 우회도로입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교통광장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일원	7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차산리	779-2	잡	1,051	547		남해군	-	
2	남해읍 차산리	779-6	잡	437	153		국(국토교통부)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864호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인터넷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남해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전자민원을 정의하는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2조, 안 제8조제2항)
  - 나. 전자민원 창구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 “을 “전자정부법 제9조”로 변경(안 제8조제1항)
  - 다. 소셜미디어 설치·운영 사항 신설 (안 제13조)
  - 라. 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 활동 및 운영을 “SNS 기자단의 운영 등” 내용으로 현행화 (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1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32,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정보통신팀(전화 055-860-3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홈페이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인터넷 이용자에게” 를 “남해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셜미디어” 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8. “SNS 기자단” 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남해군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원고를 남해군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군의” 를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를 “전자민원 창구”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를 “「전자정부법」 제9조” 로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를 “민원처리기준표” 로 한다.

제4장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참여” 를 “이용자 참여 및 홍보” 로 한다.

제12조 중 “홈페이지” 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4장으로 한다.

제13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군수는 군정 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SNS 기자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SNS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기자단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기자단은 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지역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SNS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⑤ 군수는 SNS 기자단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재 활동 등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한다.

제18조 중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 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 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홈페이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lt;본문 생략&gt;</p> <p>1. ~ 2. &lt;생략&gt;</p> <p>3.“홈페이지”란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p> <p>4.“전자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 6. &lt;생략&gt;</p> <p>7. &lt;신설&gt;</p> <p>8. &lt;신설&gt;</p>	<p>제2조(정의) &lt;현행과 같음&gt;</p> <p>1. ~ 2. &lt;현행과 같음&gt;</p> <p>3.“홈페이지”란 남해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p> <p>4.“전자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 6. &lt;현행과 같음&gt;</p> <p>7.“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p> <p>8.“SNS 기자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남해군의 홍보매체 콘텐츠를 생산을 위해 취재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원고를 남해군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p> <p>① &lt;생략&gt;</p> <p>② &lt;본문 생략&gt;</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p> <p>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lt;현행과 같음&gt;</p>

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 공개 행정을 위한 정보 제공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 공개 행정을 위한 정보 제공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3장 전자민원 창구 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 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 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참여

제4장 이용자 참여 및 홍보

제12조(이용자 참여마당 운영) ① <생략>

제12조(이용자 참여마당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 ① 군

<삭 제>

수는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터넷 홍보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및 직업별 등 형평에 맞추어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정에 필요한 경우 활동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의3(모니터의 활동 및 운영) ① 모니터는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 및 전화 등 보조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② 모니터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2.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제안사항
3. 홈페이지의 오자, 탈자 및 링크 오류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의견 및 군정 홍보 등

③ 모니터가 활동한 사항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기간을 두고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청취를 위하여 교육, 회의,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군수는 군정 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SNS 기자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SNS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기자단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기자단은 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지역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SNS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1.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할 경우
-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⑤ 군수는 SNS 기자단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재 활동 등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 ② <생략>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884호

##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군민참여의 소통행정구현과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폭 넓은 정책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소통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설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 지역 현안이나 주요재정사항 등 갈등문제의 해결방안 등 자문
- 군민 생활불편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건의 및 의견제출
-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의견제출

나. 군민소통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5명, 위원 100명 이내 군수위촉
- 임기는 2년, 1회 연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 위원회의 위원과 군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

- 위원장은 회의의장이 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 의결
- 다.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 의견청취,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 10조, 제11조, 제12조)
  -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서기는 담당팀장
  - 위원회(분과위)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회의에 출석 의견청취.
  - 산업·경제, 해양·관광, 청년·환경, 보건·복지, 자치·교육 등 5개 분과
  - 각 분과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에서 호선
  -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 라. 인터넷 소통위원 및 군정모니터요원, 비밀준수 의무 사항 명시(안 제13조, 제 14조)
  -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별도의 인터넷 및 군정모니터 구성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52425/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1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참여로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지역 현안이나 주요 쟁점사항 등 갈등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자문
3. 군민 생활불편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건의 및 의견제출
4.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의견제출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장 : 군수
2. 위촉직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③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군민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2명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  
원회의 분과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군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경제, 해양·관  
광, 청년·환경, 보건·복지, 자치·교육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  
으로 하며, 각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회의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터넷 소통위원 및 군정 모니터요원) ① 군수는 제2조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군민들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소통위원과 군정 모니터요원(이하 “인터넷 소통위원 등”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터넷 소통위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터넷 소통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인터넷 소통위원 등은 임기 중 또는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886호

##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상위법령 위배 및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름
  - 나.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안 제4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름
  - 다. 요보호아동의 우선 조치 후 사후심의 조항 신설(안 제12조)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운영상 미비점 보완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2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아동장애인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4,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아동장애인팀(전화 055-860-3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우선 보호조치)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p> <p>① -----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사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해군의회의 의원</li> <li>2.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뛰어난 사람</li> <li>4. 아동 관련 단체 또는 아동복지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제2조(구성)</p> <p>①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li> <li>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 ② (생략)

<신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9조(수당 및 여비) (생략)

제10조(자료제출 등) (생략)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생략)

제12조(회의록) (생략)

<신설>

① 위촉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삭제>

제8조(수당 및 여비) (현행과 같음)

제9조(자료제출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의 비공개)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제12조(우선보호조치)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888호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함.
3. 개정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조정 (안 제9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 055-860-3173, 팩스 055-860-3705, 이메일 [choi1760@korea.kr](mailto:choi176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100분의 100” 을 “100분의 50” 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u>100분의 100</u> 으로 한다.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u>100분의 50</u> -----.

남해군 공고 제2018 - 889호

###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13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광천	50000	2018.08.01 2028.07.31 (10년)	진주시 모덕로 270번길 12, 나동402호(올림 피아골든맨션)	김민조 외 1명 (김윤조)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06호	패류양식 (바닥식)	피조개	창선 광천	50000	2008.08.01 2018.07.31 (10년)	진주시 모덕로 270번길 12, 나동402호(올림 피아골든맨션)	김민조 외 1명 (김윤조)	재개발

※ '18/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8 - 892호

##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결격사유의 규정 실익이 없어져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항)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민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 연락처 : 전화055-860-3835, 팩스860-3882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 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도위원”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 지도위원 “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20조에”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 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p> <p>② &lt;생 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li> <li>2. 한정치산자</li> <li>3. &lt;생 략&gt;</li> </ol>	<p>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 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 「청소년 기본법」 제 21조에-----</p> <p>-----</p> <p>-----</p> <p>-----</p> <p>② &lt;현행과 같음&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li> <li>2. 피한정후견인</li> <li>3. &lt;현행과 같음&gt;</li> </ol>

알 림

남해군의회규칙 제26호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9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해군의회의원”을 “남해군의회 의원”으로,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신분증”으로, “발급등”을 “발급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남해군의회의원”을 “남해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신분증”을 “남해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으로, “인적사항등”을 “인적 사항 등”으로, “첨부하되”를 “붙이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신분증용지”를 “신분증 용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행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첨부한”을 “붙이는”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것이어야”를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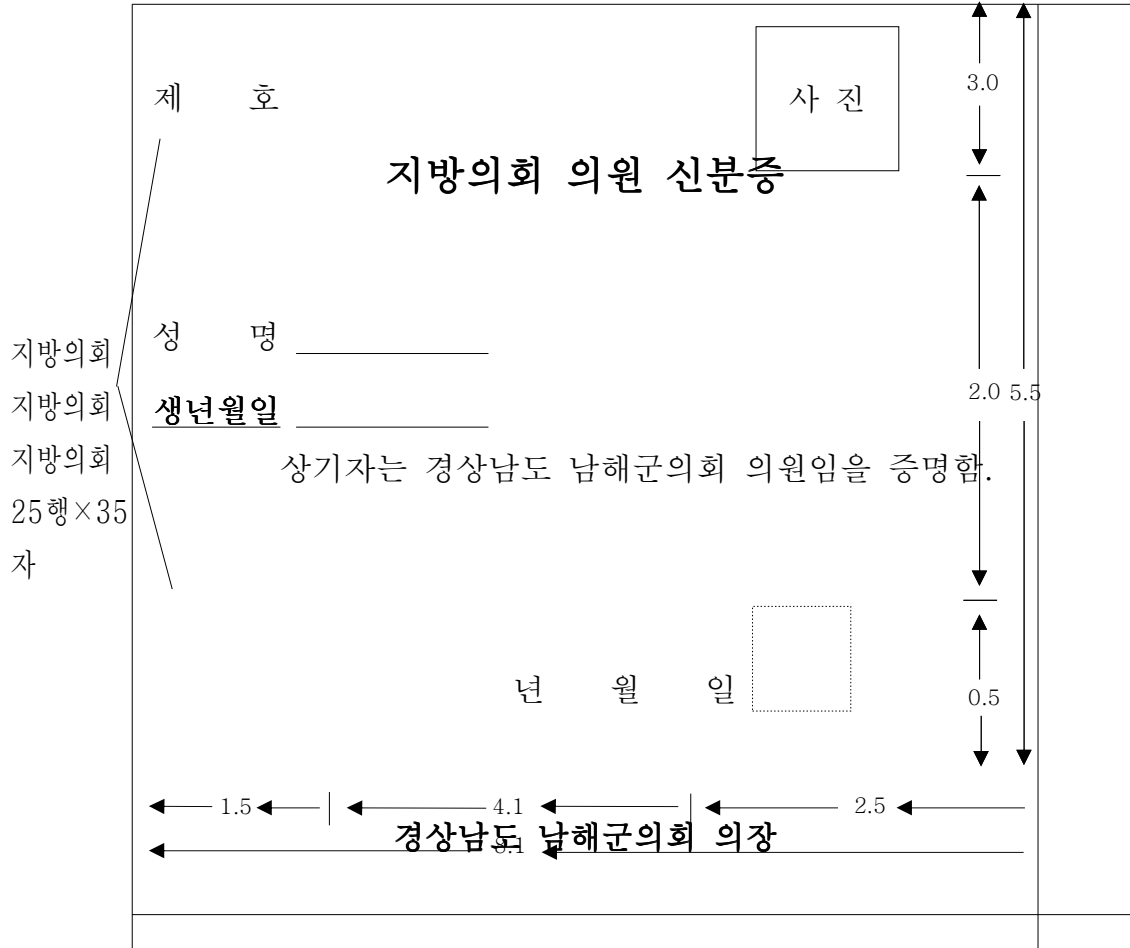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 면



후 면

**주 의 사 항**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 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 환	사 진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신분증 번호 :
4. 재발급 신청 사유 :

첨 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변경하고,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으로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개정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남해군의회의회규칙 제27호

## 남해군의회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26회 남해군의회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9일

###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해군의회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을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을 “남해군의회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 순서에” 를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남해군의회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를 “의회” 로,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고로 인하여” 를 “사고로” 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중 “5일이내의” 를 “5일 이내의” 로, “허가하고” 를 “허가하고,” 로, 제7조제3항 중 “하고” 를 “하고,” 로, 제7조제4항 중 “사고로 인하여” 를 “사고로” 로, 제7조제5항 중 “해당위원의” 를 “해당 의원의” 로, 제7조제6항 중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을 “긴급한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선거하되” 를 “선거하되,” 로 한다.

제8조제2항에서 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의장선거일이” 를 “의장 선거일이”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제1항 중 “동의를 얻어” 를 “동의를 받아”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의, 정회, 산회” 를 “개의·정회·산회” 로, 제14조제3항 중 “정회, 산회” 를 “정회·산회”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3분의 1이상의” 를 “3분의 1 이상의”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제16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를 “긴급하다고” 로 한다.

제17조 중 “5분의 1이상의” 를 “5분의 1 이상의” 로 한다.

제18조 중 “안건에 대하여” 를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를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로 제19조제2항 중 “회의시작 7일전까지” 를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로, “그렇지 않다” 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를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로, “휴회중에는” 을 “휴회 중에는” 으로 한다.

제20조의1제1항 중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를 “제출 또는 발의된 조례안의 취지” 로, “제20조의1” 을 “제20조의2”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4분의 1이상의” 를 “4분의 1 이상의” 로, 제25조제4항 중 “하며” 를 “하며,”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동의를 얻어야 한다” 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제26조제2항 중 “동의를 얻어야 한다” 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27조 중 “3분의 2이상의” 를 “3분의 2 이상의” 로, “없으며” 를 “없으며,” 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를 “관계 공무원으로” 로 한다.

제30조 중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를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하며” 를 “하며,” 로, 제32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통지는” 을 “제1항의 발언통지는” 으로 한다.

제34조 중 “아니하며” 를 “아니하며,” 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 로 한다.

제36조 중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를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로,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를 “36조(발언횟수의 제한)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심의중인” 을 “심의 중인” 으로,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5분 자유발언을” 를 “5분자유발언을” 로, 제38조제3항 중 “5분 자유발언을” 를 “5분자유발언을”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제38조제4항 중 “타인의” 를 “다른 의원의” 로, “제38조(5분 자유발언)” 를 “제38조(5분 자유발언)” 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건에 대하여” 를 “안건의 심의 시” 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하며” 를 “하며,” 로, 제41조제2항 중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2인” 을 “2명” 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를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4조 중 “투표에 의하여” 를 “투표로” 로 한다.

제45조 중 “표결을 하는 경우” 를 “표결에 있어서” 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의원으로 하여금” 을 “의원에게” 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중 “약간인의” 를 “몇 명의” 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동일의제에 대하여” 를 “같은 의제에”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49조 중 “그 결과를 선포한다” 를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로 한다.

제50조제1항제5호 중 “직과” 를 “직위와” 로, 제50조제1항제6호 중 “배정 변동” 을 “배정·변동” 으로, 제50조제1항제7호 “제반” 을 “모든” 으로, 제50조제1항제8호 중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 을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 으로, 제50조제1항제9호 중 “부칠 안건” 을 “부치는 안건” 으로, 제50조제1항제1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2인” 을 “2명” 으로, “서명 날인한다” 를 “서명 또는 날인한다” 로,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를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제52조제2항 중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을 “정정에 이의를” 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을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로, “부분에 관하여는” 을 “부분은” 으로, 제5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를 “회의록 부분의 열람·복사” 로, 제53조제3항 중 “제2항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 로, “타인에게” 를 “다른 사람에게” 로 한다.

제55조 중 “본회의중에는” 을 “본회의 중에는” 으로,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를 “제55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7조제1항 중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를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를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로, “전문위원(전문 위원을 두는 경우)의” 를 “전문위원의” 로, 제58조제2항 중 “조례안에 대하여는” 을 “조례안은” 으로, 제58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을 “관계 공무원이” 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를 “같은 의제이면 횡수” 로 한다.

제60조 중 “안건에 관하여” 를 “안건심사 시” 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의” 를 “3분의 1 이상의” 로, 제61조제2항 중 “가지며” 를 “가지며,” 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소관위원회” 를 “소관 위원회” 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자 등” 을 “사람 등” 으로, 제63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언어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로, 제63조제3항 중 “정하며” 를 “정하며,” 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 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 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 으로 본다.

제64조제1항 중 “심사과정과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를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로, 제64조제3항 중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를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를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관위원회에서” 를 “소관 위원회에서” 로, “심사과정과” 를 “심사경과와” 로, 제65조제2항 중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을 “다른 위원에게” 로 한다.

제66조제1항제6호 “심사안건명” 을 “심사 안건명” 으로, 제66조제1항제8호 “표결수” 를 “표결 수” 로, 제66조제1항제11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제66조제3항 중 “서명·날인한다” 를 “서명 또는 날인한다” 로 한다.

제67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69조 중 “3분의 1이상의” 를 “3분의 1 이상의” 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를 “총액을 의결한다” 로 한다.

제71조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 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으로, “결산” 은 “기금의 결산” 으로 본다.

제6장의 제목 중 “출석답변” 을 “출석·답변” 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의” 를 “관계 공무원의” 로, “5분의 1이상” 이” 를 “5분의 1 이상” 이” 로, 제73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의” 를 “관계 공무원의” 로, 제73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 을 “관계 공무원” 으로, “관계공무원의” 를 “관계 공무원의” 로, 제73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제36조에도 불구하고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원은 20분 범위에서 질문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제75조제3항 중 “답변에 대하여” 를 “답변에” 로 한다.

제76조 중 “관계공무원이” 를 “관계 공무원이” 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서명·날인한”을 “서명 또는 날인한”으로, 제77조제2항 중 “허가여부는”을 “허가 여부를”으로, 제77조제3항 중 “사직서에 대하여”를 “사직서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피심 의원에게”를 “피심 의원에게”로, 제78조제2항 중 “피심위원이”를 “피심 의원이”로,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를 “질병 그 밖의 사고로”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79조제4항 중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를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에게”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피심위원을”를 “피심 의원을”로, 제80조제2항 중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은”을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은”으로, “피심위원은”을 “피심 의원은”으로, 제80조제3항 중 “피심위원은”을 “피심 의원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동의를 얻어”를 “동의를 받아”로,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를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로 한다.

제82조제2호 중 “간행물·기타”를 “간행물 그 밖의”로, 제8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문란시키는 행위”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한다.

제83조 중 “관계공무원·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를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방청권교부대장에”를 “방청권 교부대장에”로, 제86조제2항 중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를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로, 제86조제3항 중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를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중에”로, 제86조제4항 중 “주소, 성명, 직업”을 “주소·성명·직업”으로, “정해진 사항을”를 “방청권에 명시된 사항을”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제87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제87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제87조제1항제4호 중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를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87조제2항 중 “관계직원으로”를 “관계 직원으로”로, 제87조제3항 중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를 “있거나 방청석의”로 한다.

제88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88조제6호 중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녹음·녹화·촬영행위”로, 제88조제7호 중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를 “회의장 내 발언에”로, 제88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제89조제2항 중 “자는 매 회기 초에”를 “사람은 매 회기 초에”로, “허가를 얻어야 한다”를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허가를 얻고자”를 “허가를 받고자”로, 제89조제3항 중 “기록보존”

을 “기록·보존”으로, “회의장내에서”를 “회의장 내에서”로, 제89조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90조제1항 중 “징계대상의원”을 “징계대상 의원”으로, 제90조제2항 중 “소속의원”을 “소속 의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90조제3항 중 “5분의 1이상의”를 “5분의 1 이상의”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를 “찬성위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제9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를 “제9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로, 제91조제2항 중 “집회일로부터”를 “집회일부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관계위원을”를 “관계 의원을”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남해군의회의 회의 규칙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 반영(안 제3조)
- 나. 의원의 체포·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 갈음(안 제7조)
- 다.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안 제8조)
- 라.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 금지(안 제8조의2)
- 마.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 명확화(안 제9조의2)
- 바. 임시의장 선거 사유 및 직무대행 기간 명확화(안 제10조)
- 사. 의안을 인쇄 배부 또는 전자문서로 전송(안 제20조, 안 제64조)
- 아.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안 제46조의2)
- 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안 제63조의2)
- 차.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처리 방법(안 제72조의2)
- 카.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방법 등 구체화(안 제74조제2항)
- 타. 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 공개(안 제89조의2)



**대명 제2018 - 796호**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18-47호(2018. 4. 5)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 계획 열람 후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8. 02.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인)**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 치	보 상 내 역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며,</li> <li>○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li> </ul>

**2. 보상계획**

- 1) 보상시기 : 2018. 12월경(추후 개별통보 예정)
- 2)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 3) 보상절차 : 보상계획 알림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4)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가격 결정 후 개별통지(다만, 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5)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시행자 :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최주영

4.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5.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18. 08. 02. ~ 2018. 08. 17. (16일간)

2)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TEL: 055-860-3415)

➢ 보상사업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대명타워

T:02)2222-7273, F:02)2222-7289

6. 열람공고 : 토지조서 등 열람 (붙임 참조)

7.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이 의 신 청 서

사업의 명칭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일자	2018. . .
성 명	(인)	주민번호	
연 락 처		주 소	
토지 및 물건 소재지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지번	

이 의 신 청 내 역

민원요지

비 고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귀하**

## 물진조서

○ 사업 시행자 : ㈜대명레저산업

○ 사업의 명칭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소유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미조면 송정리	산358-8	전망대(진물)	철근콘크리트조 1층 피로티	30㎡	1/1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철근콘크리트조 2층 전망대 (스테인레스 난간 포함)	30㎡	1/1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1-2	미조면 송정리	산358-2	전망대(계단)	W:1.5m x L:46m	1식	1/1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1-3	미조면 송정리	산358-2	전망대(바닥)	보도블럭 및 경계석	66㎡	1/1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1-4	미조면 송정리	산358-2	표지판1	이정표(양부목)	1식	1/1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1-5	미조면 송정리	산358-2	표지판2	안내판(양부목)	1식	1/1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1-6	미조면 송정리	산358-2	등산로 계단	원주목	1식	1/1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토지조서

○ 사업 시행자 : ㈜대명레저산업

○ 사업의 명칭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입원 번호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황	성명	주소(소유주소)	성명	주소	성명	
		2필지			795			1명						
1	미조면 송정리	산 358-2		임 임	748	1/1	계획관리	주식회사 한국에스알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암류	
								김0호	경남 진주시****					대표이사
2	미조면 송정리	산 358-8		임 임	47	1/1	계획관리	주식회사 한국에스알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암류	
								김0호	경남 진주시****					대표이사